

p. 28

6. 조선시대 box

직수아문 - ① 사람을 가두는 권한

⇒ ① 각 관청이 직권에 의해 위법자를 체포하고 구금하는 권한

p. 30

갑오경장 box 행정경찰장정

⇨ 조직법상 경찰과 행정은 분화 되었지만, 작용법상은 아직 미분화 되었다.

⇒ 경찰과 행정의 분화가 제대로 이루어진 것은 아니다.

p. 33

box 경찰사무의 조직의 정비

(맨 밑에 추가) ⇨경찰의 이념에 민주적 요소가 도입되었으나, 민주적으로 개혁할 기회를 갖지 못했다.(민주적 요소O. 민주적 개혁X)

p. 35~ p. 41 외국경찰 부분 삭제.

p. 53.

경찰조직 및 경찰행정관청 box

경찰청 - 경찰청장 -

② 임기 - 2년 (신분보장 O)

⇒ ② 임기 - 2년

④ 임명절차 : 경찰위원회(동의) ⇨안전행정부장관(제청) ⇨총리(경유) ⇨대통령(임명)

⇒ ④ 임명절차 : 경찰위원회(동의) ⇨행정자치부장관(제청) ⇨총리(경유) ⇨대통령(임명)

⑤ 부속기관 ㉠ 단 국립과학수사연구소 및 2개의 지방분소는 안전행정부 소속으로 되어 있으나, 경찰청장의 지휘.감독하에 운영된다.

⇒ ㉡ 단 국립과학수사연구원 및 2개의 지방분소는 행정자치부 소속으로 되어 있으나, 경찰청장의 지휘.감독하에 운영된다.

지방경찰청 - ② 서울경찰청장 및 경기도지방경찰청장과 부산지방경찰청장은 치안정감으로, 그 밖의 지방경찰청장은 치안감으로 보한다.

⇒ ② 서울경찰청장 및 경기도지방경찰청장과 부산지방경찰청장, 인천지방경찰청장은 치안정감으로, 그 밖의 지방경찰청장은 치안감으로 보한다.

경찰서 - ③ 경찰서장 - ㉢ 경찰서장 소속하에 지구대 또는 파출소를 두고, 그 설치기준은 치안수요,교통,지리 등 관할구역의 특성을 고려하여 행정안전부령으로 정한다. 다만, 필요한 경우에는 출장소를 둘 수 있다.

⇒ ㉣ 경찰서장 소속하에 지구대 또는 파출소를 두고, 그 설치기준은 치안수요,교통,지리 등 관할구역의 특성을 고려하여 행정자치부령으로 정한다. 다만, 필요한 경우에는 출장소를 둘 수 있다.

p. 54

해양경찰청 box

교체 =>

해양경비 안전본부	법적 근거	㉠ 국민안전처와 그 소속기관 직제의 적용을 받고, 경찰법의 적용은 받지 않음. ㉡ 경찰공무원법·경찰관직무집행법·경찰직무응원법을 준용.
	해양경비안전 본부	㉠ 해양경비안전본부장은 치안총감으로 보한다. ㉡ 해양경비안전본부장은 임기규정이 없음(신분보장 X) ㉢ 임명절차 : 국민안전처장관(제청) ⇨ 총리(경유) ⇨ 대통령(임명)
	지방해양경비 안전본부	㉠ 국민안전처장관 소속으로 지방해양경비안전본부를 두고, 지방해양경비안전본부장 소속으로 해양경비안전서를 둔다. ㉡ 지방해양경비안전본부장은 국민안전처장관의 명을 받아 소관 사무를 총괄하고, 소속 공무원을 지휘·감독한다.
	해양경비안전 서	㉠ 해양경비안전서에 서장 1명을 두며, 서장은 총경으로 보한다. ㉡ 서장은 지방해양경비안전본부장의 명을 받아 소관사무를 총괄하고, 소속 공무원을 지휘·감독한다.

p. 55

3. 경찰위원회 box

설치근거 - 경찰법 제 5조(안전행정부에 설치함)

=> 경찰법 제 5조(행정자치부에 설치함)

위원구성 - ⑤ 임명 : 안전행정부장관(제청) ⇨총리(경유) ⇨대통령(임명)

=> ⑤ 임명 : 행정자치부장관(제청) ⇨총리(경유) ⇨대통령(임명)

기타 - 회의 - ② 임시회의 ㉠ 위원 3인 이상이나 안전행정부 장관 또는 경찰청장이 요구할 경우

=> ㉠ 위원 3인 이상이나 행정자치부 장관 또는 경찰청장이 요구할 경우

기타 - 사무 - ① 사무는 경찰청에서 수행 ⇨ 안전행정부에서 수행한다.(X)

=> ① 사무는 경찰청에서 수행 ⇨ 행정자치부에서 수행한다.(X)

p. 57.

TIP box

경찰위원회 -

소속 - 안전행정부 => 행정자치부

위원의 임명 - 안전행정부장관의 제청으로 총리를 거쳐 대통령이 임명 => 행정자치부장관의 제청으로 총리를 거쳐 대통령이 임명

재의요구권 - 안전행정부장관의 재의요구권 인정 ⇒ 행정자치부장관의 재의요구권 인정

소청심사위원회 -

소속 - 안전행정부 ⇒ 인사혁신처

위원의 임명 - 안전행정부장관의 제청으로 총리를 거쳐 대통령이 임명 ⇒ 인사혁신처장의 제청으로 총리를 거쳐 대통령이 임명

위원장 - 안전행정부장관의 제청으로 총리를 거쳐 대통령이 임명 ⇒ 인사혁신처장의 제청으로 총리를 거쳐 대통령이 임명

재의요구권 - 당사자나 안전행정부장관의 재의요구권 인정(X) ⇒ 당사자나 인사혁신처장의 재의요구권 인정(X)

p. 61

3)임용의 결격사유 ① 결격사유 box

③ 금치산자 또는 한정치산자 ⇒ 피성년후견인 또는 피한정후견인

4)신규임용 box

채용후보자의 등록 - ① 공개경쟁채용시험, 경찰간부후보생 공개경쟁선발시험 및 특별채용시험에 합격한 자는 행정안전부령 또는 국토해양부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임용권자 또는 임용제청권자에게 채용후보자등록을 하여야 한다.(의무적)

⇒ ① 공개경쟁채용시험, 경찰간부후보생 공개경쟁선발시험 및 특별채용시험에 합격한 자는 **(삭제)** 임용권자 또는 임용제청권자에게 채용후보자등록을 하여야 한다.(의무적)

채용후보자 명부작성 -

① 경찰청장 또는 해양경찰청장은 신규채용시험에 합격한 자를 성적순위에 따라 채용후보자명부에 등재하여야 한다.(의무적)

⇒ ① 경찰청장**(삭제)**은 신규채용시험에 합격한 자를 성적순위에 따라 채용후보자명부에 등재하여야 한다.(의무적)

② 채용후보자명부의 유효기간은 2년으로 하되, 경찰청장 또는 해양경찰청장은 필요에 따라 1년의 범위 안에서 그 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

⇒ ② 채용후보자명부의 유효기간은 2년으로 하되, 경찰청장**(삭제)**은 필요에 따라 1년의 범위 안에서 그 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

p. 62

5)시보임용 box

시보임용 경찰공무원등에 대한 교육훈련 - 임용권자 또는 임용제청권자는 시보임용예정자가 교육훈련성적이 만점의 6할 미만이거나 생활기록이 극히 불량할 때에는 시보임용을 하지 아니할 수 있다.

⇒ 삭제

p. 63

3. 인사기관 box

총경 - 임명권자 - {절차} 경찰청장(추천) ⇨ 안행부장관(제청) ⇨ 총리(경유) ⇨ 대통령이 임명

⇒ {절차} 경찰청장(추천) ⇨ 행자부장관(제청) ⇨ 총리(경유) ⇨ 대통령이 임명

p. 66

참고. 각종 사유 정리 box

직권휴직 - ④ 기타 법률의 규정에 의한 의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직무를 이탈하게 되었을 때

⇒ ④ 그 밖의 법률 규정에 의한 의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직무를 이탈하게 되었을 때

p. 67

7) 직위해제 box

효력 - ② 보수 : 봉급의 80% 지급

③ 직위해제 기간은 징계여부와 관계없이 승진소요 최저년수 및 경력평정 기간에 산입하지 않음

⇒

② 직무수행 능력이 부족하거나 근무성적이 극히 나쁜 자로 직위해제된 경우에는 보수의 80%, 파면·해임·강등 또는 정직에 해당하는 징계 의결이 요구 중인 자와 형사 사건으로 기소된 자(약식명령이 청구된 자는 제외한다)는 보수의 70%만 지급한다.

③ 직위해제기간은 승진소요 최저연수에 산입 불가하다.(중징계, 형사기소로 직위해제처분을 받은 자의 경우에 그 처분의 사유가 된 사건이 법원의 판결에 의하여 무죄로 확정된 경우의 그 직위해제기간은 산입한다.)

p. 68.

참고. 계급정년 box

기타 - ③ 경무관 이상 정년연장의 경우 - 안행정부장관 및 국무총리를 거쳐 대통령의 승인

⇒ ③ 경무관 이상 정년연장의 경우 - 행정자치부장관 및 국무총리를 거쳐 대통령의 승인

p. 69.

3.경찰공무원의 권리 box

신분상 권리 - 국가공무원법상 권리 - ①신분 및 직위보유권 - ㉠ 경찰청장(신분보장O), 해양경찰청장(신분보장X)

⇒ ㉡ 경찰청장(신분보장O), 해양경비안전본부장(신분보장X)

p. 71.

box 공직자윤리법상 의무 - ③ 퇴직공직자의 취업제한

총경(자치총경 포함) 이상의 경찰공무원은 퇴직일부터 2년간, 퇴직 전 5년 동안 소속하였던 부서의 업무와 밀접한 관련이 있는 사기업체에 취업할 수 없다.

⇒ 총경(자치총경 포함) 이상의 경찰공무원은 퇴직일부터 3년간, 퇴직 전 5년 동안 소속하였던 부서의 업무와 밀접한 관련이 있는 사기업체에 취업할 수 없다.

p. 74.

3)징계절차 box

징계권자 - ② 표 : 안전행정부장관.총리(경유) ⇒ 행정자치부장관.총리(경유)

p. 75.

4)징계위원회의 종류 및 관할

① 경찰공무원 징계위원회의 설치

㉠경찰공무원 중앙징계위원회는 경찰청 및 해양경찰청에 둔다.

⇒ ㉡경찰공무원 중앙징계위원회는 국민안전처 및 경찰청에 둔다.

㉢경찰공무원 보통징계위원회는 경찰청, 해양경찰청, 지방경찰청, 지방해양경찰청, 경찰대학, 경찰교육원, 중앙경찰학교, 경찰수사연수원, 해양경찰학교, 경찰병원, 경찰서, 경찰기동대, 전투경찰대, 해양경찰서, 정비창, 경비함정 및 경찰청장 또는 해양경찰청장이 지정하는 경감 이상의 경찰공무원을 장으로 하는 기관에 둔다.

⇒㉣경찰공무원 보통징계위원회는 경찰청, 국민안전처, 지방경찰청, 지방해양경비안전본부, (삭제), 경찰서, 경찰기동대 등 경찰청장 또는 국민안전처 장관이 지정하는 경감 이상의 경찰공무원을 장으로 하는 기관에 둔다.

p. 76.

box 경찰공무원보통징계위원회 -

경찰서, 경찰기동대 및 해양경찰서 등 총경 이상을 장으로 하는 경찰기관

⇒경찰서, 경찰기동대 (삭제) 등 총경 이상을 장으로 하는 경찰기관

p. 79.

3. 대우 공무원제도 box

⇒ 삭제

4. 소청심사위원회 box

설치근거 - 국가공무원법 제9조(소속 - 안전행정부) ⇒ 국가공무원법 제9조(소속 - 인사혁신처)

위원의 임명 - ① 위원장과 위원의 임명 - 안전행정부장관(제청) ⇨ 총리(경유) ⇨ 대통령(임명) ⇒ ① 위원장과 위원의 임명 - 인사혁신처장(제청) ⇨ 총리(경유) ⇨ 대통령(임명)

p. 80

box

임시위원의 임명 - 제척.기피.회피. 등으로 위원 수가 3명 미만이 된 경우 - 3명이 될 때까지 안전행정부장관은 임시위원을 임명하여 심사,결정에 참여하도록 하여야 한다.

⇒제척.기피.회피. 등으로 위원 수가 3명 미만이 된 경우 - 3명이 될 때까지 인사혁신처장은 임시위원을 임명하여 심사,결정에 참여하도록 하여야 한다.

재의요구 - ① 안전행정부장관의 재의요구권은 인정하지 않음

⇒ ① 인사혁신처장의 재의요구권은 인정하지 않음

p. 88

3.경찰하명의 종류 box

- 대상에 의한 분류 - ① 개별하명과 일반하명 ⇒ 예시 삭제
 ② 대인적 하명과 대물적 하명 ⇒ 예시 삭제
 ③ 혼합적 하명(대인적하명 +대물적하명) ⇒ 예시 삭제

p. 89

6. 무효.취소.철회

전체내용 변경 ⇒

무효	외관상 행정행위는 존재하나 그 하자가 중대·명백하여 행정청의 취소가 없어도 처음부터 그 법률행위의 효과가 발생하지 않는 행위
취소	경찰처분의 취소란 경찰처분에 하자가 있지만 그 하자가 경미하여 부당 또는 단순 위법에 불과하므로 「일단 유효하게 효력을 발생」하지만 나중에 정당한 권한있는 기관에 의하여 행정행위의 하자를 이유로 그 효력이 「소급적으로 소멸」되는 경우
철회	일단유효 하지만 철회시 부터 효과가 없는 것으로 간주

p. 90

7. 하자의 승계

전체내용 변경 ⇒

- ① 선행행위에 하자가 있는 경우
 ㉠ 선행행위에 기초한 후행행위에 하자가 있다.(하자의 승계가 있다)
 ㉡ 선행행위에 기초한 후행행위에 하자가 없다.(하자의 승계가 없다)
 ② 원칙 - 행정행위 사이에는 하자의 승계가 인정되지 않음
 ③ 예외(하자의 승계가 인정되는 경우가 있음)
 ㉠ 선행행위가 당연 무효인 경우
 ▶ 선행행위가 취소인 경우에는 하자의 승계를 인정하지 않음
 ㉡ 선·후 행정행위가 결합하여 하나의 행위가 되는 경우
 ④ 선·후행행위가 상호 독립하여 별개의 효과를 발생하는 경우
 ㉠ 선행행위가 무효인 경우 - 하자는 승계가 인정
 ㉡ 선행행위가 취소인 경우 - 하자는 승계되지 않음

p. 99

1.불심검문 box

- 대상자 - ① **혐의자적 지위** - 어떤 죄를 범하였거나 또는 범하려 하고 있다고 의심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는 자. ⇒ ① **(삭제)** 어떤 죄를 범하였거나 또는 범하려 하고 있다고 의심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는 자.
 ② **참고인적 지위** - 이미 행하여진 범죄 또는 행하여지려고 하는 범죄에 관하여 그 사실을 안다고 인정되는 자. ⇒ ② **(삭제)** 이미 행하여진 범죄 또는 행하여지려고 하는 범죄에 관하여 그 사실을 안다고 인정되는 자

p. 100

box

㉠ 변호인의 조력을 받을 권리 - 고지 ⇒ ㉡ 변호인의 도움을 받을 권리 - 고지

p. 101

box

수단 - ㉠경고 - 그 장소에 모인 사람, 사물의 관리자, 기타 관계인

⇒ ㉠ 경고 - 그 장소에 모인 사람, 사물의 관리자, 그 밖의 관계인

㉢ 직접적인 위험 방지조치 - 위험사태의 발생현장에 있는 자, 사물의 관리자 기타 관계자

⇒ ㉢ 직접적인 위험 방지조치 - 위험사태의 발생현장에 있는 자, 사물의 관리자 그 밖의 관계자

p. 102.

7. 국제협력업무(제8조의 2)

전체내용 변경 ⇒

경찰청장(국민안전처 소속 경찰공무원의 직무에 관한 사항인 경우에는 국민안전처장관을 말한다)은 이 법에 따른 경찰관의 직무수행을 위하여 외국 정부기관, 국제기구 등과 자료 교환, 국제협력 활동 등을 할 수 있다

9. 경찰장비(제10조)

전체내용 변경 ⇒

① 경찰관은 직무수행 중 경찰장비를 사용할 수 있다. 다만, 사람의 생명이나 신체에 위해를 끼칠 수 있는 경찰장비(이하 이 조에서 "위해성 경찰장비"라 한다)를 사용할 때에는 필요한 안전교육과 안전검사를 받은 후 사용하여야 한다.	
② ①에서 "경찰장비"란 무기, 경찰장구, 최루제와 그 발사장치, 살수차, 감식기구, 해안 감시기구, 통신기구, 차량·선박·항공기 등 경찰이 직무를 수행할 때 필요한 장치와 기구를 말한다.	
③ 경찰관은 경찰장비를 함부로 개조하거나 경찰장비에 임의의 장비를 부착하여 일반적인 사용법과 달리 사용함으로써 다른 사람의 생명·신체에 위해를 끼쳐서는 아니 된다.	
④ 위해성 경찰장비는 필요한 최소한도에서 사용하여야 한다.	
⑤ 경찰청장은 위해성 경찰장비를 새로 도입하려는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안전성 검사를 실시하여 그 안전성 검사의 결과보고서를 국회 소관 상임위원회에 제출하여야 한다. 이 경우 안전성 검사에는 외부 전문가를 참여시켜야 한다.	
경찰장구	수갑, 포승, 호송용포승, 경찰봉, 호신용경봉, 전자충격기, 진압봉, 방패 및 전자방패
무기	권총, 소총, 기관총, 산탄총, 유탄발사기, 박격포, 3인치포, 클레이모어, 수류탄, 폭약류 및 도검
분사기 등	근접분사기, 가스분사기, 가스발사총, 가스분사검용경봉, 최루탄발사기 및 최루탄
기타장비	특수진압차·도주차량차단장비·가스차·석궁·살수차·물포·다목적발사기

14. 손실보상

전체내용 변경 ⇒

개요	국가는 경찰관의 적법한 직무집행으로 인하여 손실을 입은 자에 대하여 정당한 보상을 하여야 한다.
소멸시효	손실보상을 청구할 수 있는 권리는 손실이 있음을 안 날부터 3년, 손실이 발생한 날부터 5년간 행사하지 아니하면 시효의 완성으로 소멸한다.
손실보상의 지급절차 및 방법	<p>㉠ 경찰청장등은 손실보상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보상 여부 및 보상금액을 결정한다.</p> <p>㉡ 경찰청장등은 ㉠에 따른 결정일부 10일 이내에 통지서에 결정 내용을 적어서 청구인에게 통지하여야 한다.</p> <p>㉢ 보상금은 다른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현금으로 지급하여야 한다.</p> <p>㉣ 보상금은 일시불로 지급하되, 예산 부족 등의 사유로 일시금으로 지급할 수 없는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청구인의 동의를 받아 분할하여 지급할 수 있다.</p> <p>㉤ 손실보상의 청구 및 지급에 필요한 사항은 경찰청장(국민안전처 소속 경찰공무원의 직무에 관한 사항은 국민안전처장관을 말한다. 이하 같다)이 정한다.</p>
손실보상심의위원회의 설치 및 구성	<p>㉠ 소속 경찰공무원의 직무집행으로 인하여 발생한 손실보상청구 사건을 심의하기 위하여 국민안전처, 경찰청, 지방경찰청 및 지방해양경비안전본부에 손실보상심의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설치한다.</p> <p>㉡ 위원회는 위원장 1명을 포함한 5명 이상 7명 이하의 위원으로 구성한다.</p> <p>㉢ 위원회의 위원은 경찰청장등이 위촉하거나 임명한다.</p> <p>㉣ 위촉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한다.</p> <p>㉤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위원회에 간사 1명을 두되, 간사는 소속 경찰공무원 중에서 경찰청장등이 지명한다.</p>
위원장	<p>㉠ 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互選)한다.</p> <p>㉡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는 때에는 위원장이 미리 지명한 위원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p>
손실보상심의위원회의 운영	<p>㉠ 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開議)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p> <p>㉡ 위원회는 심의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관계 공무원이나 관계 기관에 사실조사나 자료의 제출 등을 요구할 수 있으며, 관계 전문가에게 필요한 정보의 제공이나 의견의 진술 등을 요청할 수 있다.</p>

2. 이상적 관료제의 구조적인 특성

⇒ 삭제

p.110

2.예산의 집행 box

집행과정 - ㉔번 아래에 추가 ⇒

- ① 기획재정부장관은 각 중앙관서의 장에게 예산을 배정한 때에는 감사원에 통지하여야 한다.
- ② 기획재정부장관은 예산집행의 효율성을 높이기 위하여 매년 예산집행에 관한 지침을 작성하여 각 중앙관서의 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 ③ 각 중앙관서의 장은 세출예산이 정한 목적 외에 경비를 사용할 수 없다.

p. 110

관서운영경비

⇨관서운영경비 = 관서의 일상경비 + 도급경비

⇒ 삭제

1.지출의 원칙 ⇒ 삭제

2.관서운영경비의 범위와 지급 box

관서운영경비 지급 - ㉓ 예외적으로 현금으로 지급할 경우(이하 ㉕ ㉖ ㉗ ㉘) ⇒ 삭제

p. 111

3. 관서운영경비 사용잔액의 반납 ⇒ 삭제

p. 114

2. 물품관리관의 체계 ⇒ 삭제

p. 123

3. 정보공개위원회 box

설치 - 안전행정부장관 소속으로 정보공개위원회를 둔다. ⇒ 행정자치부장관 소속으로 정보공개위원회를 둔다.

p. 124~p. 126

제 1절 경찰제도 개혁 ⇒ 삭제

p. 133

box

차별적 동일시 이론 ⇒ 삭제

p. 134

box

차별적 강화이론 ⇒ 삭제

견제이론 ⇒ 삭제

동조성 전념이론 ⇒ 삭제

문화갈등이론 ⇒ 삭제
사회유대이론(통제이론) ⇒ 삭제

p. 136
2. 생활안전경찰활동의 평가기준 ⇒ 삭제

p.138
2. 지역경찰활동
④ 지역경찰관의 동원사유(㉠ ㉡ ㉢ ㉣ ㉤) ⇒ 삭제

p. 141
참고. 순찰지구대 CCTV 설치 ⇒ 삭제

p. 144
6) 보고 ⇒ 삭제

p. 147
2) 음란행위 ⇒ 삭제

p. 148
2.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및 식품위생법
전체내용 변경 ⇒

종류	정의
유흥주점	① 주로 주류를 조리.판매하는 영업으로서 유흥종사자를 두거나 유흥시설을 설치할 수 있고 손님이 노래를 부르거나 춤을 추는 행위가 허용되는 영업이다. ② ‘유흥종사자’란 손님과 함께 술을 마시며 노래 또는 춤으로 손님의 유흥을 돋우는 부녀자를 말한다.
단란주점	① 주로 주류를 조리.판매하는 영업으로서 손님이 노래를 부르는 행위가 허용되는 영업이다. ② 유흥주점을 제외한 식품접객업소에서의接客행위는 처벌할 수 있으므로 단란주점에서의 유흥接客부(남녀불문) 고용은 처벌된다.

p. 153.
box
신고사항 - 화약류 운반신고 - 운반 개시 **4시간** 전에 발송지 관할 경찰서장에게 신고
⇒ 운반 개시 **1시간** 전에 발송지 관할 경찰서장에게 신고

p. 156.
2. 실종아동 등 및 가출인 업무처리 규칙
전체 내용 변경⇒
1)용어의 정의

용 어	정 의
실 종 아 동 등	① 아동등 - 실종 당시 18세 미만 아동, 지적 · 자폐성 · 정신장애인, 치매환자를 말한다. ② 실종아동등 - 약취 · 유인 · 유기 · 사고 또는 가출하거나 길을 잃는 등의 사유로 인하여 보호자로부터 이탈된 아동등을 말한다. ③ 찾는실종아동 등 - 실종아동 등 중 보호자가 찾고 있는 실종아동 등을 말한다. ④ 보호실종아동 등 - 보호자가 확인되지 않아 경찰관이 보호하고 있는 실종아동 등을 말한다.
장기 실종 아동 등	보호자로부터 신고를 접수한 지 48시간이 경과한 후에도 발견되지 않은 찾는 실종아동등
가출인	신고 당시 보호자로부터 이탈된 만 18세 이상의 사람을 말한다.
발생지	"발생지"란 실종아동등 및 가출인이 실종·가출 전 최종적으로 목격되었거나 목격되었을 것으로 추정하여 신고자 등이 진술한 장소를 말하며, 신고자 등이 최종 목격 장소를 진술하지 못하거나, 목격되었을 것으로 추정되는 장소가 대중교통시설 등일 경우 또는 실종·가출 발생 후 1개월이 경과한 때에는 실종아동등 및 가출인의 실종 전 최종 주거지를 말한다.
발견지	"발견지"란 실종아동등 또는 가출인을 발견하여 보호 중인 장소를 말하며, 발견한 장소와 보호 중인 장소가 서로 다른 경우에는 보호 중인 장소를 말한다.
강력범죄	「경찰청 사무분장 규칙」 제24조에 따른 사건 중 살인 · 강도 · 변사사건 등을 말하며, 약취 · 유인 · 체포 · 감금은 제외한다.

2)정보시스템

정보시스템의 운영	경찰청 생활안전국장은 정보시스템으로 실종아동 등 프로파일링시스템 및 실종아동찾기센터 홈페이지(이하 "인터넷 안전드림"이라 한다)를 운영한다.
실종아동등 프로파일링시스템에 입력하는 대상	① 실종아동등 ② 가출인 ③ 보호시설 입소자 중 보호자가 확인되지 않는 사람(보호시설 무연고자) ④ 변사자·교통사고 사상자 중 신원불상자
실종아동등 프로파일링시스템 입력제외 대상	① 채무관계 해결, 형사사건 당사자 소재 확인 등 실종아동등 및 가출인 발견 외 다른 목적으로 신고된 사람 ② 수사기관으로부터 지명수배 또는 지명통보된 사람 ③ 허위로 신고된 자 ④ 보호자 중 일부가 가출시 동행한 아동 등 ⑤ 그 밖에 신고 내용을 종합하였을 때 명백히 입력대상이 아니라고 판단되는 사람

3)실종아동 등 프로파일링시스템에서 데이터베이스로 관리하는 자료

구 분	내 용
자료보존 기간	① 발견된 18세 미만 아동 및 가출인 - 수배 해제 후로부터 5년간 보관 ② 발견된 지적·자폐성·정신장애인 등 및 치매환자 - 수배 해제 후로부터 10년간 보관 ③ 미발견자 - 소재 발견 시까지 보관 ④ 보호시설 무연고자, 신원불상자 - 본인 요청시 및 신원 확인시 즉시 삭제 ※ 다만, 대상자가 사망하거나 보호자가 삭제를 요구한 경우는 즉시 삭제하여야 한다.
자료공개	경찰관서 장은 본인 또는 보호자의 동의를 받아 실종아동등 프로파일링시스템에서 데이터베이스로 관리하는 실종아동등 및 보호시설 무연고자 자료를 인터넷 안전드림에 공개할 수 있다.
공개자료의 삭제	경찰관서의 장은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때에는 지체 없이 인터넷 안전드림에 공개된 자료를 삭제하여야 한다. ① 찾는실종아동등을 발견한 때 ② 보호실종아동등 또는 보호시설 무연고자의 보호자를 확인한 때 ③ 본인 또는 보호자가 공개된 자료의 삭제를 요청하는 때

4)실종아동 등 프로파일링시스템 수배

구 분	내 용
등록	경찰관서의 장은 정보통신망 입력 대상에 대하여 별지 제2호서식의 실종아동 등 프로파일링시스템 입력자료를 시스템에 등록한다.
수배해제	실종아동 등에 대한 해제는 실종아동찾기센터에서 하며, 지방경찰청장 및 경찰서장이 해제하려면 실종아동찾기센터로 요청하여야 한다.
해제사유	경찰관서의 장은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실종아동 등 프로파일링시스템에 수배된 자료를 해제하여야 한다. ① 찾는실종아동등 및 가출인의 소재를 발견한 경우 ② 보호실종아동등의 신원을 확인하거나 보호자를 확인한 경우 ③ 신원불상자의 신원을 확인한 경우 ④ 허위 또는 오인신고인 경우 ⑤ 지명수배 또는 지명통보 대상자임을 확인한 경우 ⑥ 보호자가 해제를 요청한 경우

5)기타

실종아동찾기센터	신속하고 효과적인 실종아동 등 관련 업무수행을 위해 경찰청에 실종아동 찾기센터를 설치함.
장기실종아동 추적팀	장기실종아동 등에 대한 전담 추적·조사를 위해 경찰청 또는 지방경찰청에 장기실종아동 추적팀을 설치할 수 있다.
실종아동등의 신고접수	실종아동 등 신고는 관할에 관계없이 실종아동찾기센터, 각 지방경찰청 및 경찰서에서 전화, 서면, 구술 등의 방법으로 접수하며 신고를 접수한 경찰관은 범죄와의 관련 여부 등을 확인해야 한다. 이 경우 지방경찰청 및 경찰서에서 신고를 접수한 때에는 즉시 신고내용을 경찰청장(실종아동찾기센터)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신고에 대한 조치 등	경찰관서의 장은 실종아동등에 대하여 현장 탐문 및 수색 후 그 결과를 즉시 보호자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이후에는 실종아동등 프로파일링시스템에 등록된 날로부터 1개월까지는 15일에 1회, 1개월이 경과한 후부터는 분기별 1회 보호자에게 추적 진행사항을 통보한다.
아동등 지문등정보의 사전등록 및 관리	경찰관서의 장은 보호자가 사전등록을 신청하는 때에는 신청서를 제출받아 10년간 보관하여야 한다.
가출인의 신고 접수	① 가출인 신고의 접수는 관할을 불문하고 접수하여야 하며, 신고접수시 관련 경찰관은 범죄와의 관련여부를 확인하여야 한다. ② 가출인 사건은 수배일로부터 반기별 1회 보호자에게 귀가 여부를 확인한다. ③ 경찰서장은 가출성인을 발견할 경우에는 가출수배가 되어 있음을 고지하고, 보호자에게 통보한다. 다만, 가출인의 의사에 반하여 보호자에게 가출인의 위치를 알 수 있는 사항을 통보하여서는 아니된다.
초동조치	① 찾는실종아동등·가출인 발생신고를 접수·통보받은 발생지 관할 경찰서장은 즉시 현장출동 경찰관을 지정하여, 현장에 출동, 탐문·수색하도록 하여야 함. ② 단, 신고자가 찾는 실종아동등 또는 가출인이 발생한지 1월이 경과한 후에 신고한 경우 탐문·수색의 생략가능
실종수사 조정위원회	① 경찰서장은 실종아동등 및 가출인의 수색·추적 중 인지된 강력범죄의 업무를 조정하기 위하여 실종수사 조정위원회를 구성하여 운영할 수 있다. ② 위원회는 위원장을 경찰서장으로 하고, 위원은 여성청소년과장(미직제시 생활안전과장), 형사과장(미직제시 수사과장) 등 과장 3인 이상으로 구성한다. ③ 위원회는 경찰서 여성청소년과장이 회부한 강력범죄 의심 사건의 범죄관련성 여부 판단 및 담당부서를 결정한다. ④ 위원회는 경찰서 여성청소년과장의 안건 회부 후 24시간 내에 서면으로 결정하여야 한다. ⑤ 경찰서장은 위원회 결정에 따라 실종아동등 및 가출인 발견을 위해 신속히 추적 또는 수사에 착수하여야 한다.

p.164

① 유형 ⇒ 삭제

② 컴퓨터 부정조작 ⇒ 삭제

p. 166

천연마약 box

크랙 ⇒ 삭제

합성마약 box

메사돈 ⇒ 삭제

p. 168

다. 마약류 관련 국제범죄조직 ⇒ 삭제

p. 170

3) 경비계획의 구성 ⇒ 삭제

p. 174

2.혼잡경비실시의 경우 부대의 편성.배치

1)편성-③영리를 목적으로 개최되는 행사 - ㉞㉞⇒삭제

2)배치 ⇒ 삭제

p. 176

4.재해경비 box

재해의 유형 ⇒ 삭제

재난관리 방식 - ⇨ 재난 발생시 재난관리 주무부서는 소방방재청으로 경찰은 현장통제 등 구조 및 피해복구 지원업무를 담당함

⇒재난 발생시 재난관리 주무부서는 국민안전처로 경찰은 현장통제 등 구조 및 피해복구 지원업무를 담당함

긴급현장상황반 ⇒ 삭제

긴급종합상황반 ⇒ 삭제

현장 지휘본부 설치 - ④ 현장지휘관 ⇒ 삭제

p. 179

TIP. ⇨ 2 이상의 시.도에 걸쳐 사태 발생시

국방부장관, 안행부장관의 건의로 ⇒ 국방부장관, 행자부장관의 건의로

p. 184

1)중동의 주요 테러조직 ⇒ 내용변경

⇒① Abu Nidal Organization (ANO)

- ② 팔레스타인 해방인민전선 (PFLP)
- ③ PFLP - GC
- ④ 하마스 (Hamas)
- ⑤ 헤즈볼라 (Hizballah)
- ⑥ 검은 구월단

p. 185

2)대테러 대책본부 및 대책반 box

국내사건대책본부 -

- ① 설치 및 운영권자 - 안전행정부장관 ⇒ ① 설치 및 운영권자 - 행정자치부장관
 - ③ 위원 - 안전행정부 및 경찰청 관계국장급 공무원으로 구성 ⇒ 행정자치부 및 경찰청 관계 국장급 공무원으로 구성
- ⇨해양에서 테러사건이 발생한 경우 : 해양수산부장관이 대책본부를 설치.운영
⇒ 국민안전처장관이 대책본부를 설치.운영

p. 188

box

무기휴대 - 내용변경 ⇒

- ① 지방경찰청장은 청원경찰이 직무수행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는 청원주의 신청에 의하여 관할 경찰서장으로 하여금 무기를 대여하여 휴대하게 할 수 있다.
- ② 지방경찰청장이 무기를 대여할 때에는 청원주로부터 국가에 기부체납된 무기에 한하여 관할 경찰서장으로 하여금 무기를 대여하여 휴대하게 할 수 있다.

p. 192.

box

원동기장치자전거 - ② 삭제

p. 193

box

어린이통학버스 -

- ㉠ 어린이통학버스에서 어린이가 타고 내릴때에는 어린이통학버스가 정차한 차로와 그 차로의 바로 옆 차로를 통행하는 차의 운전자는 어린이통학버스에 이르기 전에 일시정지하여 안전을 확인한 후 서행하여야 함.
⇒㉠ 어린이통학버스에서 어린이나 영유아가 타고 내릴때에는 어린이통학버스가 정차한 차로와 그 차로의 바로 옆 차로를 통행하는 차의 운전자는 어린이통학버스에 이르기 전에 일시정지하여 안전을 확인한 후 서행하여야 함.
- ㉡ 모든 차의 운전자는 어린이 또는 유아를 태우고 있다는 표시를 하고 도로를 통행하는 어린이통학버스를 앞지르지 못함.
⇒㉡ 모든 차의 운전자는 어린이 또는 영유아를 태우고 있다는 표시를 하고 도로를 통행하는 어린이통학버스를 앞지르지 못함.

③.④ 내용변경 ⇒

③ 어린이 통학버스의 신고(도로교통법 제52조)

ㄱ. 어린이통학버스를 운영하려는 자는 미리 관할 경찰서장에게 신고하고 신고증명서를 발급 받아야 한다.

ㄴ. 어린이통학버스로 사용할 수 있는 자동차는 행정자치부령으로 정하는 자동차로 한정한다. 이 경우 그 자동차는 도색·표지, 보험가입, 소유 관계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요건을 갖추어야 한다.

ㄷ. 누구든지 ㄱ.에 따른 신고를 하지 아니하거나 어린이를 여객대상으로 하는 한정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어린이통학버스와 비슷한 도색 및 표지를 하거나 이러한 도색 및 표지를 한 자동차를 운전하여서는 아니 된다.

④ 어린이통학버스 운전자 및 운영자의 의무

ㄱ. 어린이통학버스를 운전하는 사람은 어린이나 영유아가 타고 내리는 경우에만 점멸등 등의 장치를 작동하여야 하며, 어린이나 영유아를 태우고 운행 중인 경우에만 어린이 또는 영유아를 태우고 있다는 표시를 하여야 한다.

ㄴ. 어린이통학버스를 운전하는 사람은 어린이나 영유아가 어린이통학버스를 탈 때에는 승차한 모든 어린이나 영유아가 좌석안전띠를 매도록 한 후에 출발하여야 하며, 내릴 때에는 보도나 길가장자리구역 등 자동차로부터 안전한 장소에 도착한 것을 확인한 후에 출발하여야 한다.

⑤ 보호자가 동승하지 아니한 어린이통학버스 운전자의 의무

어린이의 승차 또는 하차를 도와주는 보호자를 태우지 아니한 어린이통학버스를 운전하는 사람은 어린이가 승차 또는 하차하는 때에 자동차에서 내려서 어린이나 영유아가 안전하게 승하차하는 것을 확인하여야 한다.

⑥ 어린이통학버스 및 어린이통학용자동차 운전자 등에 대한 안전교육

어린이통학버스를 운영하는 사람과 운전하는 사람은 어린이통학버스 등에 관한 안전교육을 받아야 한다.

p.195

TIP ⇒ 삭제

⇒ ⇨횡단보도의 설치권자 : 지방경찰청장

p. 196

3. 도로

전체내용 변경 ⇒

① 도로의 요건 - 형태성, 이용성, 공개성

② 구별목적 - 무면허운전 등은 도로교통법상 도로인 경우에만 단속 가능하다.

p. 197

5.안전표지

② 안전표시의 종류

⇒

② 교통안전표지의 종류 및 내용

종 류	내 용
주의표지	도로상태가 위험하거나 도로 또는 그 근처에 위험물이 있는 경우에 필요한 안전조치를 할 수 있도록 이를 도로사용자에게 알리는 표지
규제표지	도로교통의 안전을 위하여 각종 제한.금지 등의 규제를 하는 경우에 이를 도로사용자에게 알리는 표지
지시표지	도로의 통행방법.통행구분 등 도로교통의 안전을 위하여 필요한 지시를 하는 경우에 도로사용자가 이에 따르도록 알리는 표지
보조표지	주의표지.규제표지 또는 지시표지의 주 기능을 보충하여 도로사용자에게 알리는 표지
노면표지	도로교통의 안전을 위하여 각종 주의.규제.지시 등의 내용을 노면에 기호.문자 또는 선으로 도로사용자에게 알리는 표지

p.200

2.교통정리의 원칙

내용변경 ⇒

① 2대 지주 - 교통의 안전, 소통의 원활

② 4대 원칙 - 교통균 단순화의 원칙, 도로능률 증진의 원칙, 교통기획 평등의 원칙, 우선교통권의 원칙

p.201

5.교통사고 처리 요령 box

공소권 있는 사고 - ※ 내용 삭제

p.205

3)운전면허의 결격사유

② 정신병자, 정신미약자, 간질병자 ⇒ ② 정신병자, 정신미약자, 뇌전증환자

p.207

box

필요적 취소,정지사유 추가 ⇒

⑩ 운전면허를 받은 사람이 자신의 운전면허를 실효(失效)시킬 목적으로 지방경찰청장에게 자진하여 운전면허를 반납하는 경우. 다만, 실효시키려는 운전면허가 취소처분 또는 정지처분의 대상이거나 효력정지 기간 중인 경우는 제외한다.

p.212

1)정보의 의의

⇒ 프랑스군이 사용하던 군사용어를 번역하여 만든 것 ⇒ 삭제

p.219

2.정보의 요구

1)정보요구의 형태 ⇒ 삭제

p.223

3) 내용에 따른 정보의 분류 ⇒ 삭제

p.225

2.용어의 정의 box 추가 ⇒

질서유지인	주최자가 자신을 보좌하여 집회 또는 시위의 질서를 유지하게 할 목적으로 임명한 자를 말한다. ▶ 동법은 질서유지인에 대해 그 능력이나 자격 또는 전문성에 관해 규정하고 있지 않다.
경찰관서	국가경찰관서를 말한다. ▶ 제주자치경찰관서는 동법의 경찰관서에 해당하지 않는다.

⇒질서유지인(18세이상)에 대해 그 능력이나 자격 또는 전문성에 관해 규정하고 있지 않음⇒ 삭제

⇒집회 및 시위에 관한 법률상 경찰관서는 국가경찰만을 말하고, 제주자치경찰은 집회 및 시위에 관한 법률상의 경찰관서에 해당하지 않는다 ⇒ 삭제

p.228

box

상대적금지사유 - ⑤ 야간 옥외집회의 조건부 허용

내용변경 ⇒ ⑤ 야간(해가 뜨기 전이나 해가 진 후)옥외집회의 조건부 허용 - 관할 경찰관서장은 해가 뜨기 전이나 해가 진 후의 옥외집회를 허용하는 경우에는 서면으로 질서유지를 위한 조건을 구체적으로 밝혀 주최자에게 알려야 한다.

⑥ 야간(자정부터 해가 뜨기 전)옥외시위의 금지 - '시위'에 있어서 '해가 진 후부터 같은 날 24시까지의 시위'는 헌법에 위반되어 자정부터 해가 뜨기 전의 옥외시위만 금지한다.

p.229

2.경제전의 수단 ⇒ 삭제

p.230

2.집단행동 ⇒ 삭제

p.234

제1절 국가의 안전보장과 보안경찰

내용삭제 후 변경

⇒ 제 1절 보안경찰

간첩이나 좌익사범을 대상으로 하는 경찰

p.234

1.공산주의의 이론 box

제목만 남기고 내용 삭제

공산주의철학이론 -

①헤겔의 변증법

②유물론

③유물사관

공산주의경제이론 -

①노동가치설

②자본주의 붕괴론

③잉여가치설

④제국주의론

공산주의정치이론 -

①폭력 혁명론

②프롤레타리아 독재론

③계급투쟁론

④국가사멸론

p.235.

TIP ⇒삭제

p. 237

box

국방위원회 소속 -

정찰총국 1국 ⇒ 정찰총국 1국 (**작전국**)

정찰총국 2국 ⇒ 정찰총국 2국 (**정찰국**)

정찰총국 3국 ⇒ 정찰총국 3국 (**기술국**)

정찰총국 5국 ⇒ 정찰총국 5국 (**해외정보국**)

p.241 ⇒ 전체 삭제

p.243

4. 신호 box ⇒ 전체 삭제

5. 감시 box ⇒ 전체 삭제

p.250

TIP.

보안관찰 심의위원회 ⇒ 보안관찰 심의위원회 (법무부에 설치)

추가 ⇒

<p>TIP - 북한이탈주민</p> <p>1. 정의</p> <p>"북한이탈주민"이란 군사분계선 이북지역(이하 "북한"이라 한다)에 주소, 직계가족, 배우자, 직장 등을 두고 있는 사람으로서 북한을 벗어난 후 외국 국적을 취득하지 아니한 사람을 말한다.</p> <p>2. 기본원칙</p> <p>① 대한민국은 보호대상자를 인도주의에 입각하여 특별히 보호한다.</p> <p>② 대한민국은 외국에 체류하고 있는 북한이탈주민의 보호 및 지원 등을 위하여 외교적 노력을 다하여야 한다.</p> <p>③ 보호대상자는 대한민국의 자유민주적 법질서에 적응하여 건강하고 문화적인 생활을 할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한다.</p> <p>④ 통일부장관은 북한이탈주민에 대한 보호 및 지원 등을 위하여 북한이탈주민의 실태를 파악하고, 그 결과를 정책에 반영하여야 한다.</p>

p.255

2.외국인의 상륙 box

상륙의 의의 - 부득이한 사유로 사증 없이 공항,항만에서 출입국관리소장 등의 허가를 받아 일시 입국하는 것

⇒ 부득이한 사유로 사증 없이 공항,항만에서 지방출입국.외국인관서장 등의 허가를 받아 일시 입국하는 것

p.256

4.외국인의 출국 box

외국인의 출국정지(국민의 출국금지와 동일)- 내용변경⇒

외국인의 출국정지	<p>① 출국정지사유</p> <p>법무부장관은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외국인에 대하여는 3개월 이내의 기간을 정하여 출국을 정지할 수 있다.</p> <p>㉠ 형사재판에 계속(係屬) 중인 사람</p> <p>㉡ 징역형이나 금고형의 집행이 끝나지 아니한 사람</p> <p>㉢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금액 이상의 벌금(1천만원)이나 추징금(2천만원)을 내지 아니한 사람</p> <p>㉣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금액(5천만원) 이상의 국세.관세 또는 지방세를 정당한 사유 없이 그 납부기한까지 내지 아니한 사람</p> <p>㉤ 대한민국의 이익이나 공공의 안전 또는 경제질서를 해칠 우려가 있어 그 출</p>
-----------	---

	<p>국이 적당하지 아니하다고 법무부령으로 정하는 사람</p> <p>② 범죄수사를 위한 출국정지</p> <p>법무부장관은 범죄수사를 위하여 출국이 적당하지 아니하다고 인정되는 외국인에 대하여는 10일 이내의 기간을 정하여 출국을 정지할 수 있다. 다만, 다음에 해당하는 사람은 그 정한 기간으로 한다.</p> <p>㉠ 도주 등 특별한 사유가 있어 수사진행이 어려운 외국인 - 1개월 이내</p> <p>㉡ 소재를 알 수 없어 기소중지결정이 된 외국인 - 3개월 이내</p> <p>㉢ 기소중지결정이 된 경우로서 체포영장 또는 구속영장이 발부된 외국인 - 영장 유효기간 이내</p>
국민의 출국금지	<p>① 출국정지사유</p> <p>법무부장관은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외국인에 대하여는 6개월 이내의 기간을 정하여 출국을 정지할 수 있다.</p> <p>㉠ 형사재판에 계속(係屬) 중인 사람</p> <p>㉡ 징역형이나 금고형의 집행이 끝나지 아니한 사람</p> <p>㉢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금액 이상의 벌금(1천만원)이나 추징금(2천만원)을 내지 아니한 사람</p> <p>㉣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금액(5천만원) 이상의 국세·관세 또는 지방세를 정당한 사유 없이 그 납부기한까지 내지 아니한 사람</p> <p>㉤ 대한민국의 이익이나 공공의 안전 또는 경제질서를 해칠 우려가 있어 그 출국이 적당하지 아니하다고 법무부령으로 정하는 사람</p> <p>② 범죄수사를 위한 출국정지</p> <p>법무부장관은 범죄수사를 위하여 출국이 적당하지 아니하다고 인정되는 외국인에 대하여는 1개월이내의 기간을 정하여 출국을 정지할 수 있다. 다만, 다음에 해당하는 사람은 그 정한 기간으로 한다.</p> <p>㉠ 소재를 알 수 없어 기소중지결정이 된 사람 또는 도주 등 특별한 사유가 있어 수사진행이 어려운 사람 - 3개월 이내</p> <p>㉡ 기소중지결정이 된 경우로서 체포영장 또는 구속영장이 발부된 사람 - 영장 유효기간 이내</p>

p.257

6.외국인의 체류

① 내용변경

⇒

① 대한민국에서 출생하여 체류자격을 가지지 못하고 체류하게 되는 외국인은 그가 출생한 날부터 90일 이내에 체류자격을 받아야 한다.

② 대한민국에서 체류 중 대한민국의 국적을 상실하거나 이탈하는 등 그 밖의 사유로 체류자격을 가지지 못하고 체류하게 되는 외국인은 그 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30일 이내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체류자격을 받아야 한다.

p.260

4. 외국군함 ⇒ 내용 삭제

p.265

2.국제수배서의 종류

맨 밑에 추가 ⇒

㉠ 인터폴 - UN수배서 : UN과 인터폴이 협력하여 국제테러범 및 테러단체에 대한 제재를 목적으로 발행

p.267.

1.경찰의 교육훈련

⇒ 내용 삭제

p. 268

3.PR과 선전의 비교

⇒ 삭제

4. 사이버범죄 box

대응기관 ⇒ 삭제